

2010.08.30 미래정책연구실

※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8.17일 발표한 “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개편 계획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농식품부, 생산에서 가공까지 전(全)단계 관리시스템 구축
-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
-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(OSP) 도입, 인증기관 지정시 ISO 65 준용
- 빠르면 내년부터 100% 민간인증제로 전환, 인증기관 관리는 강화

□ 주요내용

1. 배경 및 문제점

- 유기식품(유기농산물, 유기가공식품) 인증제도가 통합적·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, 국제기준과 합치하지 않아 문제점 노출
 - 유기식품 인증제의 이원적 운영, 동등성 조항 미비, 심사원 자격 기준 등 국제기준(CODEX, ISO 65 등)에 불합치
- 인증제도가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
 - (이중지정) 유기가공업체가 원료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2회에 걸쳐 지정 신청 필요
 - 유기농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, 유기가공식품은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지정을 신청
 - (지정기준) 유기농산물 인증기관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이 상이

○ 국제협정에서 인정하는 동등성 등 국가간 협정의 근거 미비

- WTO/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, 무역기술장벽)협정에서 인정하는 동등성 근거가 없어, 수출국들이 문제점을 제기
- 국내 유기가공업체의 원료 수급을 위해서도 동등성 근거는 필요
 -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조달 : 국산 16%, 수입 84%

○ 인증기관 지정·인증관리 미흡

-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과도한 형식요건이며, 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은 미흡
-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ISO Guide 6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유기식품인증 관련 법령에서는 미수용
- 외국 유기인증제도는 유기농식품 생산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관리(잔류물질 등) 수준

2. 개선방안

○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

-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으로 유기농산물(친환경농업육성법)과 유기가공식품(식품산업진흥법)을 단일법령에 규정
- 유기식품(농산물 및 가공식품)의 인증기관을 단일화하고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통합하여 운영

○ 국가 동등성 협정 추진으로 수입 유기식품 관리 강화

- 우리나라 유기식품의 인증제도와 동등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동등성 협정을 추진하여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
 - 동등성협정을 통한 수입산 유기식품은 우리나라 유기식품표지(로고)를 할 수 있으나,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
- 통상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기가공식품표시제(식품의약품안전청)는 제도정비기간 등을 감안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

○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Guide 65 기준(제품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) 준용

- 상근 심사원 규정, 심사원 자격기준 등 형식적 요건을 폐지하고, 학력 및 경력 등 인증심사원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

○ 인증절차 및 인증 사업자 관리 합리화

- 과정통제 중심으로 인증절차를 정립하고 인증기준도 개선
· 인증절차 : 유기계획서 제출(신청자)→유기계획서 승인(인증기관)→계획서 실행(신청자)→현장실사/인증/사후관리(인증기관)
- 서류심사가 가능토록 인증신청자(농가, 제조업체, 수입·유통업체 등)가 유기계획서(OSP : Organic System Plan)를 작성토록 제도화
· 인증기관이 현장실사 이전에 실시하는 서류심사 체계화

<참고: ISO Guide 65>

※ 이규격은 ISO 적합성평가위원회(CASCO)에서 제정, '98년 발행된 ISO/IEC Guide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을 번역하여 '02년에 작성하고, '07년에 확인한 한국산업규격임.

※ 유기식품의 경우 미국, EU, 일본,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, 일반제품인증에서 민간기관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.

□ 적용범위

- 제3자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

□ 주요내용

- 일반규정 : 업무수행 방침 · 절차, 운영방법, 공급자의 제품 평가기준
○ 조직 : 관리주체 선정, 법인체, 문서화된 조직구조, 재정적 안정성 및

자원 확보, 교육·훈련·기술적 지식 및 경력보유 직원 충분고용, 품질 시스템 보유, 외부 압력으로부터 영향 배제 등

- 운영 : 해당 제품규격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조치사항 명시
○ 외주계약 : 시험, 검사 등 외부기관에 외주할 경우 문서화된 협정서
○ 품질시스템 : 품질방침, 품질시스템, 품질메뉴얼, 문서관리 등 문서화
○ 문서화 : 인증기관의 운영, 제품인증시스템, 수수료, 로고 사용방식, 평가 및 인증절차 등 정보, 적절한 문서목록 유지 등
○ 기록 : 법규정 준수, 평가 보고서, 인증절차 등 기록 보존 방침
○ 기밀유지 : 개인 및 조직에서 인증활동관련 정보의 기밀유지 대책
○ 인증기관 인원 : 인원의 책무, 자격기준 등
○ 인증신청 : 인증제도 평가, 인증신청 및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
○ 평가 및 평가보고서 :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, 평가보고 절차 등
○ 인증의 결정 : 제품의 인증여부 및 절차, 인증 결정, 인증문서 제공 등
○ 사후관리 : 사후관리 절차, 변경사항 보고, 인증서 및 마크사용 평가 등